

법 률 안 내

석유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산업자원부령 제 호

석유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

석유사업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동판매 등) ①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9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이라 함은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소유한 적재용량 3킬로리터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배달판매의 방법"이라 함은 계량용기(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9 제4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전량논새김탱크를 말한다)에 의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석유화학제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화학제품"이라 함은 나프타·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분해공정, 벤젠·톨루엔·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으로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①법 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

정제업등록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1. 석유정제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 계획(소재지·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당해연도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제5조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법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석유의 내수판매량 및 생산량) ①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내수판매량은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변동 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1.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 ②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제7조 (석유저장시설의 범위) ①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가 소유하거나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중 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

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의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당해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저장시설로 본다.

제8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대행계약서(석유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수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당해연도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국내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영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국내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는 석

유제품”이라 함은 경비행기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항공유를 말한다.

제11조(천연가스 수출입계약등의 신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체결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수송)계약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수출입(수송)계약서 사본(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 비고 2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불구하고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 석유제품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 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4.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
-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2. 주유기의 명세서
 -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 4. 시·도지사가 영 별표 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5.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당해연도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저장시설현황·건설 또는 보유계획을 포함한다)
-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⑤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 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2. 수송장비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 판매업중 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 및 별표 16 I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2.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 및 별표 16 I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지하탱크탱크저장소 및 별표 16 I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4.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간이탱크저장소 및 별표 16 I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5.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6 I 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⑦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

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주유소·용제판매소·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대장·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당해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가 종된 영업소(지점·출장소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각각의 종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종된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의 석유제품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신고필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14조 (조건부등록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1호·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서식의 조건부등록신청서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별지 제1호·제3호 및 제6호 내지 10호서식에서의 처리기간을 말한다.

제15조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개시·휴업·폐업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을 제외한 석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 등)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과징금의 납부 및 징수)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내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9조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석유비축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①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2.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제1항의 사업중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 및 판매사업, 석유비축시설의 대여사업에 따른 수익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시정통보)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석유비축량에 미달한 때에는 1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비축재고량의 산정)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비축재고량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선박내에 있는 물량(미통관물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1.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포함)
2. 저유소(위탁저유소 포함)
3. 송유관 부속 저장시설(송유관으로 이송중인 물량 제외)
4.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중이거나 하역대기중(NOR기준)인 유조선(석유가스운반선 포함)
5. 해상구축물(6개월이상 석유를 저장할 목적으로 해상에 설치한 석유저장시설)
6. 연안선박

제4장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제24조 (부과금징수대상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량"이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30 배럴(선하증권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제25조 (가산금의 부과율) 영 제24조제3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를 말한다.

제26조 (부과금납부에 관한 서류) ①영 제

26조제3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수입(판매)부과금신고서를 말한다.

②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부과금납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부과금을 납부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부과금 납부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③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제29조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과금 납부확인서류를 품질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조항에 따라 부과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부과금환급대상제품)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에서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프로필렌
2. 유헤
3. 석유코크스
4. 중유를 재정제하여 석유제품,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제조하고 남은 제품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제5장 비상시의 석유수급조정

제28조 (주요소비자의 범위) 법제21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량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이라 함은 영 제30조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월 사용량 기준 10킬로리터를 말한다.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9조 (품질검사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유·경유·용제·중유·부생연료유·석유가스·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석유제품을 제외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윤활유
2.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제품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4과 같다.

제30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시험
· 검사기관일 것

2. 별표 5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3. 지정신청일전 2년 이내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사업계획서

3.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현황

4.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서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5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지정신청일전 2년 이내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검사자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승인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검사자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검사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반사업자(위반석유제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위반내용

제34조 (보세구역안에서의 품질보정방법 등)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가 아닌 보세구역안에서 석유제품의 품질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1. 품질에 미달하는 석유제품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첨가제·식별제 또는 착색제를 혼합하거나 당해 석유제품과 동일한 유종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보정하여야 한다.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에 보정일자, 보정행위의 장소, 보정에 사용되는 제품의 명칭 및 수량과 보정방법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품질검사기관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품질보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품질이 보정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6조 (특수용도 연료의 제조·판매) 법 제29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중 경주용자동차의 연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제37조 (품질검사대상 석유대체연료 및 품

질검사방법) ① 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대체연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이오연료유
2. 알코올연료유
3. 석탄액화연료유
4. 천연역청유
5. 유화연료유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대체연료는 품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31조제6항의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32조 및 제33조는 석유대체연료의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등 및 품질기준 위반 석유대체연료의 공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연료의 품질시험서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제조공정 및 정

제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당해연도이후 5년간의 석유대체연료 수급계획(생산·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③제1항제3호의 품질시험서에는 당해 연료의 성분분석 및 성능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시험방법 및 절차, 품질시험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9조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및 생산량 등) ①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총생산량에서 다음 각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1.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로 구입한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2.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른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에게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②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중 “영 제9조제3항”을 “영 제36조제3항”으로 “석유저장시설”은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로 “석유정제업”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보고, 제14조중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32조제4항”으로 “별지 제1호·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는 “별지 제28호”로 보고 제15조중 “법 제12조제2항”은 “법 제32조제4항”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으로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수출입업”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본다

제41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중 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대리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석유대체연료공급자와 체결한 석유대체연료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

- 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 3.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4.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
 - 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하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2. 주유기의 명세서
 -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 4. 시·도지사가 영 별표 2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5.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 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중 판매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

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주유소·판매소)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종된 영업소(지점·출장소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종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된 영업의 석유대체연료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중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

33조제3항”으로 “별지 제1호·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는 “별지 제31호 내지 제33호”로 보고 제15조중 “법 제12조제2항”은 “법 제33조제3항”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으로 “석유판매업”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으로 본다. 제43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7조제2항·제18조·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 등,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정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중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보며, 제18조중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보고 제19조중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는 “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로 보며, 제21조중 “법 제17조”는 “법 제36조”로 “영 제20조”는 “영 제41조”로 본다.

제45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등의 산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은 다음 제1호 및 제2호를 합한 물량에서 제3호이하의 물량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1. 석유대체연료 수입량
2. 석유대체연료 생산량
3.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로 구입한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4. 비축대상 석유대체연료의 수출량(주한국제연합 기타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다른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에게 부과금면제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6. 재고 변동물량

제46조(비축재고량 산정 등) ① 영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자의 비축재고량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선박내에 있는 물량(미통관물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1.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포함)
2. 저유소(위탁저유소 포함)
3. 송유관 부속 저장시설(송유관으로 이송중인 물량 제외)
4.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중이거나 하역대기중(NOR기준)인 유조선
5. 해상구축물(6개월이상 석유를 저장할 목적으로 해상에 설치한 석유저장시설)
6. 연안선박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징수대상 제외물량, 가산금

의 부과율 및 부과금 납부에 관한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중 “영 제23조제2항제4호”는 “영 제40조제2항제4호”로 보며, 제25조중 “영 제24조제3항”은 “영 제41조제2항”으로 보고, 제26조제1항중 “영 제26조제3항”은 “영 제41조제3항”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은 “별지 제37호서식”으로, 동조제2항중 “영 제29조제1항”은 “영 제41조제3항”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은 “별지 제38호서식”으로, “별지 제21호서식”은 “별지 제39호서식”으로 보며, 동조제3항중 “제29조”는 “제37조”로 “별지 제21호서식”은 “별지 제39호서식”으로 “영 제26조제1항제1호”는 “영 제41조제3항”으로 본다.

제8장 보칙

제47조 (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서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9조·제10조·제32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석유대체

연료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5조·제9조·제10조·제32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요건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4. 법 제18조·법 제19조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또는 석유대체연료수입·판매부과금의 납부 및 환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21조 내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 등의 명령, 석유배급 등의 조치 및 석유판매가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③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소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항 및 보고기한등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판매업자 · 석유비축대행업자 ·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자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 또는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업소 · 사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 및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개시 3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검사를 받을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또는 검사한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제48조(석유판매업의 예외)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석유제품별(제2항의 석유제품을 제외한다)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상호간에 당해연도에 공급한 양에서 공급받은 양을 차감한 양이 각각 전년도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계한 양의 100분의 1미만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1. 석유가스
2.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3.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석유제품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9조 (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용 휘발유 · 등유 · 경유 · 중유 · 부생연료유 · 석유가스 · 용제 및 아스팔트 : 1리터당 0.3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윤활유 : 1리터당 5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그리스 : 1킬로그램당 5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석유대체연료 : 1리터당 0.3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은 별표 9와 같다

제50조 (시 · 도지사등의 보고)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령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검사소”라 한다), 공사 및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령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행할 보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시 · 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석유판매업소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소관리현황보고서를 받기 종료후 20일 이내

- 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2. 검사소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품질검사실적보고서를 다음달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 3. 공사 또는 법인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결과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 ①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②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내지 46조의 개정규정, 제47조 및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개정규정중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업자의 종된 영업소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석유판매업자는 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이동판매방법의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2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동판매를 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